



## 자동이체(납부) 약관

### 제 1 조 약관의 적용

지로/CMS/편뱅킹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합니다)와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지로"란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자금결제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행하는 지급결제제도를 말합니다.
- ② "CMS"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공동 자금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편뱅킹"이란 카카오뱅크가 이용기관과 개별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자금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 ④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카카오뱅크와 개별 자동이체 대행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 ⑤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⑥ "영업일"이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 제 3 조 자동이체 신청

카카오뱅크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카카오뱅크가 납부자로부터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카카오뱅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제 4 조 신청서 제출기한

제 3 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 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 제 5 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 제 6 조 출금

- 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카카오뱅크 앞으로 청구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납부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대금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에게 납부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 약관과 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예금청구서나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 ③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은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납기일 현재의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합니다.
- ④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카카오뱅크에서 정한 <별표 1>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제 7 조 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카카오뱅크가 이용기관에 대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한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 8 조 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 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 취소됩니다.

## 제 9 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카카오뱅크는 해당 납기일에 카카오뱅크가 지정한 시점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며,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제 10 조 자동이체 해지

- ① 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카카오뱅크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납부자가 카카오뱅크에게 특정 계좌에 대한 자동이체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납부자의 특정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자의 요청대로 건별로 처리하며, 납부자 또는 이용기관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제 11 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 12 조 카카오뱅크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카카오뱅크는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계좌에 대하여 납부자 또는 이용기관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자동이체를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 이용기관에 신청 시 약관 적용

제 3 조의 방법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기관에게 귀속됩니다.

## 제 14 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지로/CMS/핀뱅킹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카카오뱅크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http://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처리는 불가합니다.
- ③ 납부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http://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조회 및 해지 서비스에 한하여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지로/CMS/핀뱅킹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제 16 조 약관의 변경

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조항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1. 카카오뱅크 대출원리금 이체 (대출 자동이체)
2. 카카오뱅크 카드(제휴 포함) 자동이체 출금
3. 지로 자동이체 출금
4. CMS 자동이체 출금
5. 핀뱅킹 자동이체 출금



- 6.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 (당행 자동이체, 적금 자동이체)
- 7. 타행 자동이체 출금
- 8. 업무관련수수료 출금
- 9. 기타출금이체업무